



강제징용 해법과 ‘돈의 꼬리표’



〈2023년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일부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일본을 용서하기 힘들지만 이제는 매듭 짓자.”고 공개적인 찬성 입장을 내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이 사건에서 제3자 변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 판결은 한일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엔 미쓰비시 중공업이 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에게 각 8000만원씩,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채무자는 일본 기업입니다. 민사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확정 = 채권의 확정 = 의미하고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 사건도 미쓰비시 등이 돈을 주지 않자 채권자들은 압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제집행은 크게 압류-현금화(매각)-변제의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현재까지는 강제집행이 압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제철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변호인단이 국내 자산인 PNR주식 19만 4790주(약 9억 7000만원)에 대해 압류 및 매각명령을 신청한 단계인데 압류 명령은 공시송달을 거쳐 효력이 발생했고 2021년 12월 매각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매각 명령에 대한 일본제철의 항고는 기각됐지만 재항고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본격 자산 매각 절차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제3자 변제 유효성, 강제집행 정지 절차에서 다뤄질 듯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기업의 출연금이 모인 재단 기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발표한 것입니다. 본래 빚을

갚아야 할 일본 기업 대신 제3자인 재단이 빚을 갚는 것인데 민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469조는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언상으로는 '채무자'인 일본 기업이 반대하지 않으면 제3자인 재단이 변제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제3자 변제에 있어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의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원래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대신 갚은 제3자에 대해 나중에 구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채무자인 일본 기업의 공식적인 반대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피해자 대리인단은 "일본 기업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따지고 있어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관련, 대리인단은 지난 13일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제3자 변제 반대의사를 공식화해 이 부분 또한 법적 효력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진정한 사과 없이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거나 '성질상 일본 기업이 직접 갚아야 하는 사건'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법

조계에서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한 법조인은 “이 사건 채무의 성격은 법적으로는 ‘금전채무’여서 돈을 받으면 해결되는 채무다. 가수가 공연을 하는 것처럼 특정한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채무가 아니다.”고 합니다. ‘사과’또한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거 민법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회복방법으로 ‘사죄광고’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1년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피해자 유족이 공개적으로 제3자 변제 방안을 찬성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장에도 큰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 ‘강제징용은 특별하다’ vs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가 유효한지는 강제집행 정지 절차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끝까지 배상금을 받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다면 일본 기업측에서 이미 변제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 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제3자 변제’가 유효한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원 공탁금이나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해 받는 돈이나 똑같다고 보게 되면 법원으로서도 굳이 양국간 마찰을 유발하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강제징용 배상금이 그냥 금전채무가 아닌 ‘특별한 채무’여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중요하다고 보면 강제집행 절차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이어 그 집행절차 또한 어떤 의미로든 역사에 남을 판결이 될 듯 합니다.

(출처/조선일보)